

202.67 호

행 정 명 령

법률의 일시 중지 조치 및 수정 유지 재난 비상 상황에 관한 사항

2020년 3월 7일 본인이 뉴욕주 전 지역에 주 재난 비상 상황을 선포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 EO) 202호를 발령함에 따라,

뉴욕주에서 코로나 19의 여행 관련 및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발견되었고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러므로, 이제, 본인 **ANDREW M. CUOMO** 뉴욕 주지사는 뉴욕주 헌법 및 법률이 본인에게 부여한 권한에 의거, 영향을 받는 주정부 기관 및 지역의 지방정부들이 적절히 대응할 수 없는 재난 사태가 계속 존재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뉴욕주의 헌법과 행정부법(Executive Law) 제 2-B 조 제 28항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본인은 행정명령 202호에서 설정된 것과 같이 2020년 3월 7일 토요일에 발효된 주 재난 비상상황(State Disaster Emergency) 선포를 지속하는 바입니다. 이 행정명령은 2020년 11월 3일 화요일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또한, 저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주 비상시 법률, 조례의 특정 조항, 명령, 규칙 또는 어느 기관의 규정 또는 그 일부의 준수가 비상사태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방해, 저해 또는 지연시킬 경우, 혹은 이러한 비상사태 대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러한 조항을 일시 정지 또는 수정시키기 위해 행정부 법(Executive Law) 제 2-B 조 제 29-a항에 의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법률의 일시 중지 및 수정 조치와, 행정명령 202호부터 202.21호까지 및 202.27호, 202.28호, 202.29호, 202.30호, 202.38호, 202.39호, 202.40, 202.48, 202.49, 202.50, 202.55 및 202.55.1에 포함된 후속 지침으로 대체되지 않은 모든 지침을 연장된 바와 같이, 그리고 행정명령 202.60호를 2020년 11월 3일 화요일까지 30일간 다음을 제외하고 추가 지속합니다.

- 비운전자 신분증의 유효 기간이나 만료 기한을 허용하는 범위까지의 차량 및 교통법(Vehicle and Traffic Law) 제 491항 부속조항 1은 2020년 11월 3일 자로 더이상 일시중지 또는 수정되지 않습니다.
- 자동차 또는 트레일러, 오토바이, 스노우 모빌, 선박, 제한된 사용 차량 및 모든 육로 차량에 대하여 등록 또는 번호판의 유효 기간 또는 만료 기간을 허용하는 범위까지의 차량 및 교통법 제 401항, 제 410항, 제 2222항, 제 2251항, 제 2251항. 제 2282(4)항은 2020년 11월 3일 자로 더이상 일시중지 또는 수정되지 않습니다.
- 자동차 판매자가 발행한 임시 등록 서류의 만료를 제공하는 범위까지의 차량 및 교통법 제 420-a 조는 2020년 11월 3일 자로 더이상 일시중지 또는 수정되지 않습니다.
- 형사소송법, 가정법원법, 민사 관행법 및 규칙, 청구재판소법, 보호자대리 법원절차법, 군사 법원 법, 또는 모든 법령, 지방법, 조례, 명령, 규칙, 규정, 또는 이 일부를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 주의 절차법에 규정된 모든 법적 조치, 통보, 행동, 또는 기타 절차 소송 절차의 개시, 제출, 또는 서비스에 대한 모든 특정 시간 제한을 중지한, 후속 행정명령으로 수정 및 연장된 바에 따른 행정명령 202.8호 내의 일시중지는

이전 행정명령으로 수정된 바와 같이 이로써 지속되며, 단 모든 민사 소송에 대해서 이러한 일시중지는 2020년 11월 3일까지만 유효하며 해당 날짜 이후에는 이러한 시간 제한이 더이상 중지되지 않으며 또한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 행정명령 202.60호에서 계속되고 수정된 형사소송법 제 30.30항의 일시중지 및 수정 뉴욕, 킹스, 퀸즈, 브롱크스, 리치몬드 카운티에서 발생한 중죄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효력이 없으며, 이 지역에서는 이러한 일시중지와 수정이 2020년 10월 19일까지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카운티에서는 기소된 중죄에 대해서는 일시중지가 해당 날짜 또는 피고의 기소에 의한 취조부터 유효하지 않으며(둘 중 늦은 날짜), 그렇지 않으면 해당 카운티에서는 중죄 기소를 기반으로 진행 중인 형사 조치에 대한 형사소송법 제 30.30항의 일시중지 및 수정은 이와 무관하게 본 행정명령의 서명일 90일 후인 2021년 1월 2일부터 더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2020년 10월 4일 올버니시에서 본인이 서명하고

주 정부 관인을 날인하여

선포합니다.

주지사

주지사 비서